

# 우리는 미래를 원한다.

노동이 아름답고, 사회가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소한의 임금과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은 최소한의 조치다.  
 단결과 교섭과 투쟁을 보장하는 노동권은 이런 세상을 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이를 비웃으며 노동자에게 가난과 질병, 멸시를 강요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만 붙들고 앉아 노동권을 유린하려는 수구세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아야 할 최고임금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여긴다.  
 이들은 선진국형 생산이나 노동자 건강 따위는 알 바 아니다.  
 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란 화장실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나라 망할 듯 하더니 사내유보금 950조!  
 국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지난해 9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약 67조원 늘어난 수치다.  
 대통령이 1위 재벌기업에 가서 뭘 했다면서 뉴스에 나온다.  
 다 됐고,  
 이젠 1위 재벌도 노동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직장이 건강해야 삶도, 가정도, 사회도 건강하다.

분야	핵심협약		비준국 수 회원국 187개국	한국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1930)	178	×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957)	175	×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1948)	155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1949)	165	×

▶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개 중, 가장 중요한 4개는 비준하지 않은 나라. 한국!

## ILO(국제노동기구), 어떤 기구?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LO는 1946년 유엔의 전문기관으로 편입되었고, 1969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ILO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적 협조를 통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의 결과, 파리에서 국제노동기구 설립이 합의되었습니다. ILO는 설립 이래 국제 노동기준을 제정해왔는데, 1919년 첫 번째 총회에서 ‘국제노동협약 1호, 1일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을 시작으로 2011년 기준으로 189개 조약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쟁점인 ILO 핵심협약은 ‘노동의 국제 기준’으로 ‘노동후진국’ 오명을 듣는 한국은 지금 당장 비준해야 합니다.

정권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을 거래하려 하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이 경영계를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민원사항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ILO헌장 제 19조 제 8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의 비준이 협약에 규정된 조건보다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 중재재정, 관습 및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ILO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ILO헌장 및 원칙 위반이다.

- ▶ ILO 핵심협약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국제 노동기준입니다.
- ▶ 한국은, ILO로부터 수차례 비준 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ILO 가입한지 28년째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 더 많은 노동자와 노조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노동조합을 더 크고 힘 있게 만들기 위해, ILO핵심협약 87호, 98호는 비준 되어야 합니다.
- ▶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경제력을 갖추고도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노동기본권 박탈을 논의하는 한국, 그래서 부끄럽습니다